# 평생교육원 장학금 지급 내규

제정일: 2015. 3. 1. 개정일: 2015. 7. 7. 개정일: 2017. 3. 1. 개정일: 2017. 9. 1. 개정일: 2018. 3. 1. 개정일: 2019. 6. 1.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나사렛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"교육원)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(제대로 공부하는 교육기관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. 삭제) 학비감면과 장학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교육원의 학비감면과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준,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및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내규에 따른다.

### 제2장 장학위원회

- 제3조(구성) 교육원의 장학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둘수 있다.
  - 1. 위원은 평생교육원장이 지명하는 교직원 또는 학점은행제 전공 주임교수로 한다.
  - 2.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되며, 회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부서의 직원으로 간사 1명을 둔다.
  - 3.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.
- 제4조(기능)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  - 1. 장학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  - 2.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 기준액 심의
  - 3.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

#### 제3장 장학금의 종류

### 제1절 학점은행제

- 제5조(구분) 장학금은 교육원 장학금으로 구분하며,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, 지급 액 등은 별표1과 같다.
- **제6조(지급대상)** 본 교육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장학금 수혜대상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  - 1. 학업성적이 우수한자
  - 2.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(손) 자녀
  - 3. 학생 활동에 모범적인 자
  - 4. 협약기관 임직원
  - 5. 기타 학점은행제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제7조(선발 및 장학금액) ①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 금액은 별표1과 같다.
  - ② 동점자의 경우 이수 과목 수, 취득학점, 총점 합계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.
- 제8조(이수학점) 장학생 선발의 최소 이수 학점은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, 평균점수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한다. 단, 별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9조(자격제한) ① 장학생 선발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하지 아니한다.
  - 1. 직전 학기 면학 풍토 조성에 위반하는 자
  - 2. 학사과정 105학점 이상, 전문학사 60학점 이상 수강한 자
- ② 장학금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.
  - 1. 휴학자(미등록자)
  - 2. 해당 학기 면학 풍토 조성에 위반하는 자
  - 3.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제10조(지급방법) ① 장학금 지급 방법은 장학금 종류의 성격에 따라 수업료 납부 후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에서 장학금 감면처리 방식을 병행한다.(2018.3.1.)
- ② 별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방법을 준수한다.
- ③ 이중수혜가 발생할 시 장학금액이 높은 것을 수혜하고 장학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  - 1.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(손) 자녀 장학금
  - 2. 성적우수장학금

### 제2절 일반 평생교육과정 등

- 제11조(구분) 학비감면은 교육원 학비감면으로 구분하며, 학비감면의 종류,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은 별표2와 같다.
- 제12조(자격제한) 학비감면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.
  - 1. 우리 교육원에서 학습 중 면학분위기를 해친 자
  - 2. 우리 교육원에 대하여 위해를 끼치거나 명예에 손상을 가한 자
  - 3. 허위문서를 제출한 자
- 제13조(지급방법) ① 학비감면은 수강하는 당해 과정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② 이중수혜가 발생할 시 감면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.
- 제14조(특별감면) ① 정기 시즌 외에 개설되는 일반과정, 최고위과정을 포함한 특별과 정, 외부기관과의 협력과정, 위·수탁 과정 등은 당해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학비 감면의 대상, 지급기준 등을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⑥ (경과조치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별도의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지급 사유가 발행했을 때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원장 의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.

## [별표1] 학점은행제 장학금(학비감면) 지급 기준

명칭	대상자	장학금액	선발 기준 및 제한 사항					비고
	국가유공자 본인, 배우자 및 직계(손)자녀	100(%)	-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: 100% 본교지원					
보훈 장학금		50(%)	- 국가유공자의 (손)자녀 : 50%국가보조 50%본교지원 - 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"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"에 따름 (직계(손)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(%)점 이상, 본인인 경우 성적 제한 없음)					본인, 배우자 : 교육지원대상자증 명서 원본 (손)자녀 :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
성적 장학금	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	본 학기 등록 학습과목 총 수강료 20(%)	전공별 학습자 (대상인원) 선발인원	15~29명 1명	30~44명 2명	45~59명 3명	60명 이상 4명	
		20(/0)	- 각 전공의 장학 지급 대상 인원에 따라 달라짐					
봉사 장학금	임원 학습자	수업료의 20(%)	- 대상자 : 각 전공 대표 - 등록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원칙 단, 등록인원 10명 미만 전공의 경우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원장이 승인하여 지급 가능					
	추천 학습자	30(%)	- 신입생 10명 이상을 추천한 학습자					
		20(%)	- 신입생 5~9명을 추천한 학습자					등록 인원에 한함
		10(%)	- 신입생 3~4명을 추천한 학습자					
공헌 장학금	주임교수 추천자	20(%)	- 학교와 해당 전공 발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자(전공별 1명. 단,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 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이 승인하여 인원 추가 가능)					공헌장학금 장학생 추천서
가족 장학금	직계가족 2인 이상 등록자	수업료의 20(%)	- 당해 학기에 직계가족 각각 5과목 이상 등록 시					가족관계 증명서
070	교·강사 직계가족인자	수업료의 50(%)	- 당해 학기 교·강사의 직계가족인 자(교·강사의 친형제·자매 포함)					
취약계층 장학금	취약계층	수업료의 20(%)	- 장애인, 디	· 장애인, 다문화, 북한이탈자, 기초생활수급자			해당 증빙서류 제출 장학금 비율 상향조정	
협약 장학금	천안시 공무원 협약기관	수업료의 34(%)	- 천안시 공무원(산하기관 포함)					재직증명서
	천안시 자원봉사자	수업료의 20(%)	- 천안시 우수자원봉사자(100시간 이상)					1365자원봉사활동 확인서(한국중앙자 원봉사센터발급)
	상기 이외 협약기관	수업료의 20(%)	학점은행제 협약체결 기관 종사자, 회원					재직증명서 또는 회원증
외부지정 장학금	학점은행제 재학생	기부금액 범위 내	- 지정권힌	기부자가 지정한 학생 지정권한은 기부자에 의해 위임된 자(기부 추천인)가 대행할 수 있음			이수학점 및 성적 제한없음	

[별표2] 평생교육과정 장학금(학비감면) 지급 기준

명칭	수혜자	감면액	제출 서류
학비감면	- 동일학기 강좌 2개 이상 수강자 - 동일학기 가족 2인 이상 수강자 - 3학기 이상 연속 수강자 - 본교 졸업생인 수강자 (대학원 포함) - 본교 학점은행제 졸업자 <84학점, 타전공 48학점 이 상 취득자> - 본교 교직원 가족	10%	
	- 5학기 이상 연속 수강자 - 나사렛교단 목회자 (목사, 부교역자) - 장애인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, 기초생활수급자 -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- 만 65세 이상 어르신	20%	
	- 본교 학생 - 10학기 이상 연속 수강자	30%	
	- 본교 교직원	50%	

<sup>\*</sup> 단, 1:1 개인 레슨과정 학습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함.